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79호 2023. 10. 23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1335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3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- 예천군 호명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 승인을 받음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호명읍 설치(안 제2조)

- 호명면 → 호명읍

나. 호명읍 관할구역(안 제3조)

- 호명면 관할구역과 동일함(16개 법정리)

4. 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행정지원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kurs29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행정지원실

3) 팩스 : 054-650-60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(전화: 054-650-68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예천군 호명면을 예천군 호명읍으로 한다.

제3조(관할구역) 예천군 호명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 명	읍의 명칭	관 할 구 역
예천군	호명읍	현행 호명면과 같음 (본포리, 원곡리, 송곡리, 금능리, 한어리, 본리, 형호리, 오천리, 백송리, 산합리, 직산리, 황지리, 월포리, 종산리 내신리, 담암리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“호명면, 호명면장”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“호명읍, 호명읍장”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예천읍”을 “예천읍, 호명읍”으로, “호명면, 유천면”을 “유천면”으로 한다.

②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호명면”을 “호명읍”으로 한다.

③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의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중 호명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예천군보건소란 다음에 호명보건지소란을 삽입하며, 송곡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풍양보건지소란 다음에 송곡보건진료소란을 삽입한다.

호명보건지소	예천군 호명읍 오천길 23	호명읍 일원
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

송곡보건진료소	예천군 호명읍 호명로 305	송곡,한어,백송,원곡,본포리
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④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읍·면란의 “호명면”을 “호명읍”으로 하고,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.

⑤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읍면복지회관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번	명 칭	위 치
1	호명읍복지회관	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205-20
2	용문면복지회관	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-5
3	효자면복지회관	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90-6
4	은풍면복지회관	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78-16
5	감천면복지회관	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
6	보문면복지회관	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48
7	유천면복지회관	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9
8	용궁면복지회관	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134-8
9	개포면복지회관	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-14
10	지보면복지회관	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-5
11	풍양면복지회관	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60

⑥ 예천군청, 읍·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예천군청, 읍·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호명면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예천읍행정복지센터란 다음에 호명읍행정복지센터란을 삽입한다.

호명읍행정복지센터	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오천길 2	호명읍 일원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⑦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위임사무명(권한위임) 중 건축행정의 수임기관란의 “호명면”을 “호명읍”으로 한다.

⑧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중 읍면란의 “호명면”을 “호명읍”으로 하고,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.

⑨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리의 명칭 및 구역 중 읍면동란의 “호명면”을 “호명읍”으로 하고,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.

⑩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3조제2항, 제4조제2호 중 “호명면”을 “호명읍”으로 한다.

⑪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호명면”을 “호명읍”으로 한다.